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점검표 설명문

※ 장기요양기관의 규모, 급여의 종류 등 시설현황 및 기준에 따라 점검 항목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며, 현장점검 또는 자체점검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로 답한 문항은 규정이나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니오'로 답한 문항은 감염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참고: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호),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평가 매뉴얼」,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I. 감염관리체계

1. 감염관리 규정/지침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1. 감염관리 규정이나 지침 보유 - 기관에 감염관리를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습니까?(예, 규정집, 승인된 지침 등)	☐ 예 ☐ 아니오	서류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1. 감염관리 규정이나 지침 보유											
	[점검서류] 감염관리 규정집, 지침 모음집 등											
	[점검절차] 감염관리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결재공문, 회의록, 지침/규정 내 승인자 등)를 확인함											
	☐ 예 시설장의 승인을 득한 자체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규정이나 지침도 인정)											
	[참고] <table><tr><td>[승인]</td><td colspan="2">0000 감염관리 지침</td></tr><tr><td>승인자:</td><td>승인책임자:</td><td>제정일:</td></tr><tr><td>서명일:</td><td>검토책임자:</td><td>최근개정일:</td></tr><tr><td></td><td>담당부서:</td><td>검토주기:</td></tr></table> [참고] 감염관리 규정이나 지침에 포함되도록 권장되는 내용 ① 위생관리: 환경 정비, 배설물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②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 - 손위생: 손위생이 필요한 상황과 손위생 방법	[승인]	0000 감염관리 지침		승인자:	승인책임자:	제정일:	서명일:	검토책임자:	최근개정일:		담당부서:
[승인]	0000 감염관리 지침											
승인자:	승인책임자:	제정일:										
서명일:	검토책임자:	최근개정일:										
	담당부서:	검토주기:										

	- 개인보호구 착용: 장갑 착용상황, 마스크 착용 상황, 가운 착용 상황 등 - 약품 관리: 약품 보관 - 간호비품 관리 - 환경 관리: 공인된 환경소독제, 환경청소 물품 관리 등 - 세탁물 관리: 세탁물 수집용기, 수집장소, 세탁방법, 보관방법 등 - 방문객 관리: 방문객 방문이력 확인,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면회시간, 손위생 등 - 직원 감염관리 교육: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등 ③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체온, 호흡기 감염증상, 위장관 감염증상 등 ④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 관계 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 체제 및 사후관리 등
관련근거	1.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IV.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내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1. 운영규정 -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행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19. 감염병관리 -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③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확인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발췌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2. 직원 감염관리 교육(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2. 직원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모든 직원이 1년에 한 번 이상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 예(이수율이 100%인 경우) ☐ 아니오 <table border="1"> <tr> <th>재직자</th><th>교육 이수자</th><th>이수율</th></tr> <tr> <td>명</td><td>명</td><td>%</td></tr> </table>	재직자	교육 이수자	이수율	명	명	%	서류확인
재직자	교육 이수자	이수율						
명	명	%						

[문항설명]

점검기준	2. 직원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점검서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근무한 직원 명단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점검절차] 점검기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근무한 직원이 연 1회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함 a.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수: ()명
------	---

	b. 점검기간 중 입사일이 14일 미만인 직원 수: ()명 c. 재직자(a-b) 중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 1회 이상 감염관리 교육 이수자 수: ()명 ☐예 모든 재직자(a-b)가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참고] 외부 교육과 자체 교육 모두 인정하며, 교육방법으로는 문서화된 교육자료 배부,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등 모두 가능하며, 교육내용은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방법 등을 포함한다.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7. 인적자원 개발 -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①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10개 항목 중 발췌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② 신규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③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④ 매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3. 감염병 조기발견과 대응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3. 입소 전 입소자의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 신규 입소자에 대해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서류확인
4. 재입소 전 입소자의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 퇴소 후 다시 입소한 입소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서류확인
5. 감염 증상의 정기적 확인 - 입소자의 발열, 기침 및 설사 등의 감염 증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서류확인
6. 감염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체계 구축 - 감염 증상이 있는 입소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보건소에 보고하는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서류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3. 입소 전 입소자의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점검서류] 건강진단서 [점검절차] 점검일 기준으로 입소날짜가 최근인 순서대로 입소자 3인을 선정(단, 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가 있고, 감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평가함 ☐예 모든 입소자의 건강진단서가 있고, 감염성 질환 항목이 확인되는 경우 단, 감염성 질환 항목으로 결핵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로 인정하고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권고함
------	--

	4. 재입소 전 입소자의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점검서류] 급여제공기록지 등 [점검절차] 퇴소하였다가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 재입소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에 감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나, 재입소일에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감염성 질환 또는 감염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기록이 있는지를 점검함 □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진단서가 있고 감염성 질환 항목이 확인되는 경우 단, 감염성 질환 항목으로 결핵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로 인정하고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권고함 - 자체적으로 감염성 질환 또는 감염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한 경우 [참고] 감염 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권장 항목: 체온(고막체온 정상범위: 35.5~37.5℃),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 위장관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 5. 감염 증상의 정기적 확인 [점검서류] 감염 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제공기록지 [점검절차] 점검일 기준 입소자 1인을 대상으로 최근 1주일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이용하여 감염 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항목(기관에서 정함)을 매 근무조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였는지를 확인함 □예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감염 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항목이 있는 경우 - 매 근무조마다 해당 항목을 모두 확인하고 기록한 경우 [참고] 감염 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권장 항목: 체온(고막체온 정상범위: 35.5~37.5℃),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 위장관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 6. 감염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체계 구축 [점검서류] 의료기관 연계/이송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 또는 관련 서류 [점검절차] 감염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체계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연계/이송 체계에는 입소자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연계/이송절차, 이송사실에 대한 보건소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예 서면화된 이송체계(기준, 절차, 보고 등)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관련근거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19. 감염병관리 -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②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③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3.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매뉴얼」 내 ‘간호 및 처치 매뉴얼’ -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는 경우 감염, 활동의 변화 등을 관찰하고 확인하며, 일정시간 후 다시 측정한다. - 기록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정 날짜, 측정 시간, 측정 방법(예, 고막체온), 측정 결과, 측정자 2) 이상 결과가 확인된 경우, 이후 보고 및 조치 사항 4.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IV.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	---

II. 감염관리실무

4. 방문객 관리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7. 방문이력 확인 체계 구비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대비) - 방문객의 이름, 연락처, 방문 날짜, 입소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현장확인
8. 면회 안내문 게시 - 기관 출입구에 방문객 출입제한 상황, 출입절차와 면회시간, 면회장소가 포함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현장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7. 방문이력 확인 체계 구비(감염병 발생 및 유행 대비) [점검절차] 기관 방문객의 방문이력(방문일시, 이름, 주소나 연락처, 입소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함 ☐예 방문객의 방문일시, 이름, 주소나 연락처, 입소자와의 관계 등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8. 면회 안내문 게시 [점검장소] 주출입구 [점검절차] 점검장소에 ①방문객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 ②출입절차, ③면회시간, ④면회장소 등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함 ☐예 위의 4가지 사항 모두에 대한 안내문이 출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참고] 방문객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감염이 있는 자 - 화농성 질환 등 감염성 피부질환이 있는 자 -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질환이 있는 자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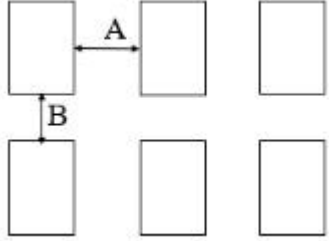
	-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19. 감염관리 -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유행시 조치사항: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2.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 II. 감염관리 실무 12장 방문객 관리 중 -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방문객 출입명부를 작성한다

5. 시설 관리

□점검장소: 다인실 침상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9. 침상 간 간격 유지 - 입소자의 침상 간 거리가 최소 1미터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장확인
10. 환기(기계 또는 자연) 가능 - 침실에 창문을 열거나 환기 장치를 사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장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9. 침상 간 간격 유지 [점검장소] 2인 이상의 침상 중 하나 선택 [점검절차] 점검장소에서(간격이 가장 좁은 것으로 관찰되는) 침상 1개를 선택함. 침상간 간격은 아래 그림의 A를 기준으로 매트리스 프레임(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는 판) 사이의 간격을 측정함 (만약, 매트리스 프레임이 매트리스보다 작다면 매트리스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예 침상 간 간격이 1m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10. 환기(기계 또는 자연) 가능 [점검장소] 문항 9번과 동일 [점검절차] 점검장소의 기계환기 또는 자연환기 여부를 확인함 - 기계환기: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 자연환기: 창문이나 출입구를 통한 환기, 창문이나 외벽체에 팬을 설치하는 경우 □예 기관 내부에 악취가 없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거나 환기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관련근거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1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②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함 3.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 5.2.2. 다른환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 5.4.2.5. 코호트 격리를 한 경우에는 병상 간 이격 거리는 1m이상을 유지하고,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침대 사이에 물리적 칸막이를 설치한다.

6. 손위생

□점검장소: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 간호사실, 케어카트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11. 알코올 손소독제 관리 - 점검장소에 알코올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며,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오 ☐ 미해당(알코올 손소독제 미사용)	현장확인
12. 손위생 실시 - 약품 준비 전과 혈당 측정 전에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손소독제로 소독합니까?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현장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11. 알코올 손소독제 관리 [점검장소]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 간호사실, 케어카트 [점검절차] 비치된 알코올 손소독제의 관리상태(유효기한, 사용가능 여부 등)를 확인함 ☐예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며, 잘 관리되고 있음 [참고] 알코올 손소독제 관리방법 - 알코올 손소독제는 내용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충하지 않으며 사용 후 폐기 - 알코올 손소독제는 제품설명서를 확인하여 유효기한을 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제품인지,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살균력이 있는 농도인지 등을 확인
	12. 손위생 실시 [점검장소] 약품준비 및 혈당 측정 장소 [점검절차] 약품준비 전과 혈당 측정 전 손위생을 실시하는지 관찰함 ☐예 약품준비 전과 혈당 측정 전 손위생을 실시하는 경우 - 2가지 상황을 모두 관찰하였고, 모두 손위생을 실시하는 경우 ‘예’로 인정 - 손위생 실시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손소독제 또는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하는 경우 손위생 실시로 인정 [참고] 손위생이 필요한 경우 - 식사하거나 식사를 먹여주기 전

	- 식탁을 차리기 전 - 음식물을 조리하기 전 - 기침, 재채기, 콧물 닦기 등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된 후 : 객담 흡인하기 위해 장갑 착용하기 전과 흡인 후 장갑 벗은 후 -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 기저귀 교환하기 전과 교환 후 : 기저귀 교환하기 위해 장갑 착용하기 전과 장갑 벗은 후 - 인슐린 주사, 혈당 측정 하기 전과 후 - 소변백의 소변을 비우고 장갑 벗은 후 - 욕창(상처) 간호 소독하기 전과 소독한 후 - 눈에 보이게 손이 더러워졌을 때 - 출근하여 근무시작 전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18. 감염관리활동 -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① 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 주출입구 손소독제, 기관내 세면대 손세정제 비치, 직원 의복 청결, 서비스 전·후 손씻기 확인 2.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 II.감염관리 실무 3장 손위생, 4장 호흡기 에티켓 중 -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손위생 관련 물품(예, 알코올 손소독제, 비누 등)을 비치

7. 위생 관리

☐ 점검장소: 목욕서비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13. 목욕물품 개별 사용 - 입소자가 사용하는 목욕수건이 개인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해당없음(서비스 미제공)	현장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13. 목욕물품 개별 사용 [점검장소] 목욕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예: 침실, 목욕실 등) [점검절차] 입소일이 1주가 경과한 입소자 1인 중 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1인을 임의로 선정하고, 목욕물품 중 목욕수건(목욕 후 건조용)을 확인함 ☐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목욕수건에 입소자 개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입소자의 개인물품 보관함에 목욕수건이 별도로 보관되어 사용하는 경우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34. 수급자 청결 서비스

	-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청결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구 및 시설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3.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 II.감염관리 실무 5장 피부관리 중 - 목욕과정에서 목욕 물품으로 인한 교차감염을 최소화 함 - 목욕물품 중 수건(목욕수건)은 개별로 사용

8. 약품 관리

□ 점검장소: 약품보관 장소(예: 간호사실)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14. 약품의 보관 및 관리 - 약품 취급 방법에 맞게 보관되어 있으며, - 보관중인 약품 중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은 없습니까?	□예 □아니오 □미해당(보관 및 관리중인 약물 없음)	현장확인
15. 인슐린 관리 및 개별 사용 - 냉장보관 약물이 음식물과 함께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 입소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이 각각 이름표나 표식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미해당(인슐린 없음)	현장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14. 약품의 보관 및 관리 [점검장소] 약품보관 장소 [점검절차] 보관 중인 약물이 약품 취급 방법에 맞게 보관(실온보관, 냉장보관 등)되고 있는지, 유효기한이 경과하였거나, 퇴소한 이용자의 약품은 없는지 약품 보관 장소에서 확인함 □예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약품 취급 방법에 맞게 보관된 경우(냉장보관 약품이 상온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 등) - 약품의 유효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퇴소한 이용자의 약품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15 인슐린 개별 사용 및 관리 [점검장소] 인슐린 보관 냉장고 [점검절차] 점검에 앞서 인슐린 투여자가 있는지를 확인함. 인슐린 투여자가 있는 경우 인슐린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음식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관중인 인슐린이 개인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함 □예 냉장보관 약물(인슐린 등) 외 음식물이 없으며, 인슐린의 개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식이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40. 투약 및 약품관리 -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③ 수급자별 투약 및 약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 2.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 III.입소자의 감염예방과 관리 3장 약품관리

	- 인슐린 등과 같이 냉장보관 약품은 음식물 등과 같이 보관해서는 안됨 - 인슐린 등과 같은 다회용량 약물은 입소자별로 사용
--	--

9. 간호비품 관리

□점검장소: 간호비품 세척과 소독/멸균 장소

※ 간호비품: 소독캔, 포셉(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16. 사용한 비품의 세척과 소독/멸균 실시 - 사용한 간호비품이 세척된 후 소독 또는 멸균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미해당(일회용품 사용)	현장확인
17. 소독/멸균기 작동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 소독/멸균기의 작동 상태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으며, 점검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미해당(소독/멸균기 없음)	현장확인 서류확인
18. 소독/멸균된 비품은 오염물과 분리하여 청결하게 보관 - 소독된 가위, 핀셋 등이 오염된 물건과 분리된 청결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현장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16. 사용한 비품의 세척과 소독/멸균 실시 1. 모든 간호비품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검절차] 간호비품의 유효기한을 확인함 ☐예 유효기한 이내인 비품을 사용하는 경우 2. 간호비품을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검장소] 간호비품 세척과 소독/멸균 장소 [점검절차] 사용한 간호비품의 소독/멸균 과정에 대해 현장 담당자에게 시연하도록 함 ☐예 사용한 간호비품을 일차 세척하고, 소독/멸균을 실시하는 경우 간호비품 세척 시 물 튀 등으로 주변 물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공간 또는 파티션 등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함 [참고] 물품의 용도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소독 및 멸균 방법을 선택 -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자외선 살균기(의료용 인증제품) 등 17. 소독/멸균기 작동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점검서류] 보유중인 소독/멸균기의 제조사 안내서, 멸균일지, 멸균장부 등 멸균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소독기를 사용하는 경우 [점검절차]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점검표 등)를 확인함 만약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소독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제조사
------	--

권장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함

□예 소독기 작동상태 점검방법을 알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멸균기를 사용하는 경우

[점검절차]

1. 멸균기의 멸균여부는 기계적/물리적 표식, 화학적 표식, 생물학적 표식을 이용한 멸균 확인 등 3가지를 확인하며, 현장에서 멸균물품을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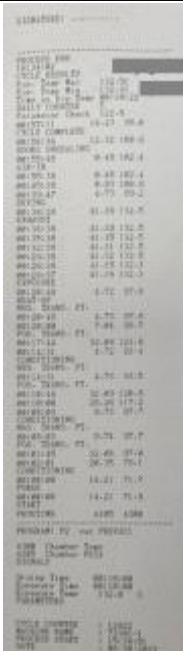
1) 멸균 확인방법 및 확인주기

구분	확인방법	확인주기
기계/물리적 방법	- 멸균과정 중 진공, 시간, 온도를 측정 - 기록지 보관 또는 기계 내 저장여부 확인	매 멸균마다
화학적 방법	-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한 화학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멸균이 완료되면 화학적 지시계의 색깔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 - 화학적 지시계 사용여부 확인	매 멸균마다
생물학적 방법	- 멸균에서만 사멸하는 미생물을 멸균기에 넣고, 멸균 과정이 끝난 후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 - 멸균기 종류별 상품화된 균주를 멸균한 후 판독기에 넣거나 배양검사를 시행함(배양검사는 외부의뢰 가능함)	매일, 단 매일 멸균하지 않는 경우 최소 매주 마다

□예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든 만족하는 경우

- 매 회 기계적/물리적 표식을 이용한 멸균 확인을 하는 경우
- 매 회 화학적 표식을 이용한 멸균 확인을 하는 경우
- 매 주 생물학적 표식을 이용한 멸균 확인을 하는 경우

[참고] 멸균 확인방법

① 기계/물리적 방법	 [기록지 예시] - 멸균시간 - 멸균온도 - 압력 - 건조시간 등
② 화학적 방법	 [고압증기멸균기 화학적 지시계 예시]

	- 멸균 완료 후 아래의 줄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화 18. 소독된 물품은 오염물과 분리하여 청결하게 보관 [점검장소] 소독된 물품 보관장소 [점검절차] 소독된 물품은 오염물(청소도구, 폐기물, 사용한 세탁물, 사용한 의료물품 등)과 분리된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함 ☐예 소독된 물품은 오염물과 분리되어 청결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18. 감염관리활동 -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 확인 2.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 II.감염관리 실무 8장 물품 소독과 멸균 - 멸균기는 제조사의 권고사항 및 건열·증기멸균기 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확인을 적용 - 오염된 물품과 깨끗한 물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한다. 3.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1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colspan="2">제2조(정의)</th></tr> <tr> <td style="width: 15%;">세척</td><td>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독</td><td>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 ① 낮은 수준 소독: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함 ② 중간 수준 소독: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③ 높은 수준 소독: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함 </td></tr> <tr> <td>멸균</td><td>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td></tr> </table>	제2조(정의)		세척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	소독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 ① 낮은 수준 소독: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함 ② 중간 수준 소독: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③ 높은 수준 소독: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함	멸균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
제2조(정의)									
세척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								
소독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 ① 낮은 수준 소독: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함 ② 중간 수준 소독: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③ 높은 수준 소독: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함								
멸균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								

10. 환경 관리

☐점검장소: 다인실 침실, 대결레 보관장소, 환경소독제 보관장소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19. 생활환경 매일 소독 - 침대 난간,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소독합니까?	☐ 예 ☐ 아니오	현장확인 서류확인
20. 커튼/칸막이의 관리 - 커튼 또는 칸막이의 오염이 없으며, - 정기적으로 세탁 또는 교체되었으며, 교체 주기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미해당(커튼/칸막이 없음)	현장확인 서류확인
21. 대결레(마포결레)의 구역별 구분 사용 - 화장실용과 침실용 대결레(마포결레)가 색깔이나 이름표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현장확인

[문항설명]

	19. 생활환경 매일 소독 [점검장소] 2인 이상의 다인실 중 하나 선택 [점검서류] 생활환경을 매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점검절차] 점검장소를 방문하여 생활환경의 소독상태 등을 기록한 서류(점검표, 체크리스트 등)를 확인함 □예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 서류에 소독일자, 소독부위, 소독제, 소독자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 - 서류의 소독부위 중 누락되는 곳 없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참고] 생활환경: 자주 손이 닿는 부분으로 출입문 손잡이, 문 손잡이, 복도 난간, 전등 스위치, 책상, 전화기, 엘리베이터 버튼 등 [참고] 환경부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ecolife/) → 화학제품 → 생물 화학제품 신고·승인이력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제품 안내서 20. 커튼/칸막이 정기적 교체 [점검장소] 문항 19번과 동일 [점검절차]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며, 커튼/칸막이의 교체 주기(기관에서 정함, (예)반기별)가 명시되어 있고, 지정된 주기에 따라 교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함 [예]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며, 서류를 통해 커튼/칸막이의 교체 주기가 확인되고, 기관에서 정한 주기에 맞추어 교체가 된 경우 21. 대걸레(마포걸레)는 구역별로 구분하여 사용 [점검장소] 대걸레(마포걸레) 보관장소 [점검절차] 점검장소에서 사용중인 대걸레 1개를 선정하고 침실용과 화장실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지를 확인함 □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구역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 봉에 사용장소를 기록해 두는 경우 - 걸레의 색을 달리하는 경우 - 일회용 걸레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18. 감염관리활동 -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⑤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 일자, 소독부위, 소독제, 소독자 확인 2.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 II.감염관리 실무 9장 청소 중 - 소독제는 국내·외 인증기관의 등록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환경부 허가 및 승인 제품은 초록누리 홈페이지(http://ecolife.me.go.kr/ecolife/)에서 확인할 수 있음. 미등록

	제품은 소독제의 안전성이나 소독 효과를 확신할 수 없음 - 제품의 설명서를 확인하여 소독제 농도, 적용시간, 유효기한(개봉 또는 희석 시)을 준수 - 커튼, 블라인드는 주기적으로 세탁하거나 청소하며 눈에 보이는 오염이 발생하면 가능한 즉시 오염을 제거 - 입소자의 생활공간(방, 거실 등), 화장실, 목욕탕, 조리장,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청소도구(마포걸레, 손걸레, 양동이 등)는 각 장소별로 분리하여 전용으로 사용
--	---

11. 세탁물 관리

□점검장소: 세탁물 수집장소와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장소

문항	점검결과	점검방법
22. 오염된 세탁물의 분리 수거 - 오염된 세탁물이 일반 세탁물과 구분되어 방수가 가능한 봉투나 수거통에 담겨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현장확인
23. 오염된 세탁물의 분리 세탁 - 오염된 세탁물은 일반 세탁물과 분리된 세탁기를 사용하거나 별도로 세탁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미해당(외부 세탁의뢰)	현장확인
24. 세탁이 끝난 세탁물(청결세탁물)은 오염물과 분리하여 청결하게 보관 - 세탁이 끝난 청결한 세탁물이 오염된 세탁물과 분리된 청결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현장확인

[문항설명]

점검기준	22. 오염된 세탁물의 분리 수거 [점검장소] 세탁물 수집장소(예: 침실) 중 하나 선택 [점검절차] 점검장소를 방문하여 오염된 세탁물 수거통(수거비닐)은 일반 세탁물 수거통(수거비닐)과 구분되는 지를 확인함 ☐예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오염된 세탁물 수거통(수거비닐)이 일반 세탁물 수거통(수거비닐)과 구분되는 경우 예) 색이 다른 경우, 수거통(수거비닐)에 ‘오염’ 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둔 경우 - 오염된 세탁물 수거통(수거비닐)은 방수가 가능한 경우
	23. 오염된 세탁물의 분리 세탁 [점검장소] 세탁실 [점검절차] 점검에 앞서 오염된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는지, 외부에 세탁을 의뢰하는 지를 확인함. 자체 세탁인 경우 점검장소를 방문하여 오염된 세탁물용 세탁기와 일반 세탁물용 세탁기가 각각 존재하는 지를 확인함. 세탁기가 각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염 세탁물의 1차 세척을 별도로 하는지를 확인함 ☐예 다음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오염된 세탁물용 세탁기와 일반 세탁물용 세탁기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으며, 각 세탁기가 표식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오염된 세탁물을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하는 경우 24. 세탁이 끝난 세탁물(청결세탁물)은 오염물과 분리하여 청결하게 보관 [점검장소] 청결세탁물 보관장소 중 하나 선택 [점검절차] 청결세탁물 보관장소가 세탁물 수집통과 분리되어 있는지, 보관장소에 먼지, 물, 오물이 없는지를 확인함 □예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청결세탁물 보관장소가 세탁물 수집통과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청결세탁물 보관장소를 눈으로 보아 먼지, 물, 오물 없이 청결한 경우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매뉴얼」3. 세탁물 관리 - 구토,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세탁물, 피부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의 세탁물은 감염관리를 위해 별도의 빨래통에 분리 수거하고 분리 세탁한다. 2.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Ⅱ.감염관리 실무 6장 세탁물 관리 - 소변, 대변 등의 분비물로 젖어 있는 세탁물은 내용물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세지 않는 수집용기(바구니 등)에 수집 - 분비물(대소변, 고름 등)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다른(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청결한 보관장소(옷장 등)를 마련하여 세탁하지 않은 세탁물과 분리하여 보관